

# 노무관련 상담사례 ①①

자료제공 / 노동부

## 남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여부

**Q** 남성근로자는 며칠의 출산간호 휴가를 보장 하나?

**A**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법정 근로시간

**Q**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A**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 출산휴가중 근로자의 요청으로 업무복귀가 가능한지

**Q** 출산 여성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중 업무복귀 가능여부?

**A**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규정된 강행규정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90일 미만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된다.

##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구제절차

**Q**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시 권리 및 구제 방법

**A**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 육아휴직기간이 호봉산정 및 승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Q** 육아휴직기간이 호봉산정 및 승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A**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기간은 승직,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 해고의 정당성 여부

**Q**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고, 동법 제24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 등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수 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생리휴가 사용시 연·월차 발생 여부?

**Q** 생리휴가 사용시 연·월차 발생 여부?

**A**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여자근로자가 생리기간 중에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한 것으로, 연·월차휴가와와는 무관하므로 생리휴가와와는 별도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를 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Q**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를 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남여 불문)에게 출산이후 영아의 양육을 위한 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출산 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